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 구체화 등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57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 구체화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5. 5. 2.
3. 회 부 일: 2025.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체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여 재정의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 구체화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을 구체화하고, 선수에게 특수상해 등을 한 체육지도자는 필요적 자격취소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1의2. (생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u> 를 말한다.	11의3. ----- ----- ----- -----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가. <u>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u>

○ 현행법 제2조제11호의3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선수에 대한 폭행 등의 체육계 인권침해 행위를 비롯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이 떨어지고, 선수에 대한 폭행 등의 체육계 인권침해 행위는 체육지도자 자격의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을 4개로 구체화하고, 선수에 대한 특수상해·성추행·성폭행 행위는 체육지도자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유형 구분 없음)	①상해·협박·따돌림 등에 의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 수반 행위 ②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폭력 행위 ③학생선수 학습권 박탈·침해 행위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 ④기타 차별·권리침해 행위

구분	현행	개정안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사유	①거짓·부정방법으로 자격 취득 ②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③자격증 타인 대여 ④결격사유(특정 범죄경력자) 해당	①거짓·부정방법으로 자격 취득 ②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③자격증 타인 대여 ④결격사유(특정 범죄경력자) 해당 ⑤ <u>선수 신체 특수상해</u> ⑥ <u>선수 성추행·성폭행</u>
	⑤선수 신체 폭행·상해 ⑥선수 성희롱·성폭행 ⑦매 2년 스포츠윤리교육 미이수 ⑧기타 직무상 부정·비위사실	⑤선수 신체 폭행·상해 (특수상해 제외) ⑥선수 성희롱·성폭행 (성추행·성폭행 제외) ⑦매 2년 스포츠윤리교육 미이수 ⑧기타 직무상 부정·비위사실

○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대상인 ‘체육계 인권침해’ 범위가 명확해지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체육인의 인권 보호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체육계 인권침해’ 용어 정의(안 제2조제11호의3)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① 정의 구체화 및 나열에 따른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 ② ‘따돌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은 법률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범위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¹⁾

- 둘째, 대상에 ‘선수의 보호자’를 포함하고, 같은 호 라목에 ‘배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²⁾.

○ 또한, 체육지도자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안 제12조제1항)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첫째, 사실여부 등이 재판 등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 필요적 자격 취소 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직업의 자유 등의 위배 소지가 있어 보임.

- 둘째, 재판이 확정되면 현행법 제11조의5 및 제12조제4호에 따라 자격운영위원회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므로³⁾, 법 제12조제5호 및 제6호 등에서는 재판 확정

1)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안 제2조제11호의3 신중검토

< 유사 입법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2) (교육부 의견)

○ 선수의 진학, 취업 등 진로 결정, 경기실적 요건에 해당하는 대회(경기) 출전을 조건으로 선수의 보호자와 체육지도자 간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반영 필요

*진중오의원 주재 ‘학생선수 체육행정 피해에 대한 정책 간담회’(25.3.27.) 중 선수 보호자 및 체육지도자의 사례 반영

○ 차별은 ‘대우의 불평등’을 의미하고 ‘배제’는 ‘소속 및 참여의 제외’를 의미하여 배제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 제시된 차별에 더해 ‘배제’를 포함할 필요

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 6. (생략)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이라도 자격운영위원회가 자체 판단 하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⁴⁾.

- 셋째, 개정 시에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및 행위별 빈도, 행위별 위험성 및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일례로, 「형법」상 ‘중상해’⁵⁾ 및 ‘특수상해’ 모두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특수상해’만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u>제4호까지</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u>취소하여야 한다</u>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 ----- ----- ----- ----- ----- ----- ----- ----- ----- <u>제4호까지, 제5호(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6호(성추행,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u>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 ----- ----- ----- ----- ----- ----- ----- ----- ----- <u>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u>

5)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 행위의 법정형]

범죄행위	법정형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①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물건을 휴대하여 일반상해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 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성추행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등)	예) 강제추행(폭행·협박)·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 업무(·고용·기타관계)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행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예) 강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 업무(·고용·기타관계)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한편,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안 제12조제1항 단서의 내용은 개정 법률 시행 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⁶⁾, 법률의 공백 방지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 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현행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규정 신설, 체육

6) < 개정안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도자 자격의 필요적 취소 사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608, 김은희
의원 대표발의 ‘24. 3. 7.)이 발의되어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7).

문 의 처
02)6788-5375

7) < 심사경과 >

- 24. 3. 8. 문체위 회부
- 24. 5. 9.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원회부
- 24. 5. 29. 임기만료폐기

[참고자료1]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및 취소 등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현황

(단위: 명)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계
계		277,841	14,673	16,633	1,843	27,772	22,037	23,716	21,513	406,028
전문 (74~)	소계	38,295	1,827	1,861	563	3,857	2,395	2,942	2,469	54,209
	1급	1,356	41	48	-	106	55	38	45	1,689
	2급	36,939	1,786	1,813	563	3,751	2,340	2,904	2,424	52,520
생활 (86~)	소계	225,926	9,164	10,435	1,012	16,596	13,930	16,032	12,915	306,010
	1급	9,739	244	258	34	386	346	244	218	11,469
	2급	216,187	8,920	10,177	978	16,210	13,584	15,788	12,697	294,541
장애 (15~)	소계	1,510	548	708	125	1,868	1,198	999	1,139	8,095
	1급	-	-	15	-	39	27	15	10	106
	2급	1,510	548	693	125	1,829	1,171	984	1,129	7,989
건강 (86~)	-	1,745	94	235	-	305	313	145	323	3,160
유소년 (15~)	-	4,855	1,185	1,391	58	2,034	1,717	1,501	1,879	14,620
노인 (15~)	-	5,510	1,855	2,003	85	3,112	2,484	2,097	2,788	19,934

□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현황

(‘25. 4. 기준, 단위: 명)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자격취소	1	1,504	736	957	413	696	4,307
자격정지	-	-	46	1	-	-	47

[참고자료2]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별표4]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취소

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8개월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바.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 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3년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서면경고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아.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 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